

환·경·관·련·질·의·응·답

임대에 변경신고에 관해

Q

법인사업장이 운영하던 대기배출시설을 동일지번 내에 있는 B법인사업장에게 임대하고자 할 경우 두 업체가 배출시설임대차 계약서(공증필함)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토대로 변경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임대 등 소유에 대한 변경이 선결된 후 변경이 가능한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임대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명서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변경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차량) 기준 문의

Q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항 중 차량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트랙터(견인부)와 트레일러(피견인부)가 분리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견인부는 그대로인데 피견인부가 탱크로리, 컨테이너 트럭, 밀폐식 차량 등으로 바꾸어 움직일 수 있는 차량

질의 2) 기존에 트레일러(피견인부)를 허가증 상에 등록했는데 다른 트레일러로 교체시 변경허가(신고)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

질의 1)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으로 구성하여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등록된 피견인차량 이외의 피견인차량을 부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습니다. 질의 2)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조금형 세척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여부

Q

단조공장 단조금형 세척시설이 폐수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단조공장 단조금형 세척시설에서 나오는 폐유(분석결과 유분함량 5% 이상임)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코져 합니다. 이럴 경우 상기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단조공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한 폐수배출시설(63.조립금속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며 일정량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설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수의 성상이 유분함량 5%이상으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병원부지내에 사업장이 다른 연 구소 입주시 오수 및 폐수, 폐기물 처리방법

Q

본 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염성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병원부지내에 사업장이 다른 연구소(건축연면적 1,650㎡) 입주 시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오수, 폐수,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1)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로 유입하여 병합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장이 다르므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병합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연구소 명으로 별도의 신고 및 위탁처리 계약을 하고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질의 1) 폐수배출시설이 허가(신고)증이 서로 다른 사업자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따라 공동방지시설 설치를 승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동일한 대표자가 같은 상호로 동일한 부지 내에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배출자로 처리증명 할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대상현장 배출자 신고

Q 당 현장은 00치수대책공사 현장으로서 (토목공사, 분리발주 대상현장) 발주처에서 배출자 신고 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비위생매립장의 쓰레기 선별공사를 주 가로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립지역은 굴착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혼합폐기물 매립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매립지역 상부의 건설폐기물도 처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1) 매립폐기물이 5ton 이상 발생시 배출자 신고를 발

주처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하여야 하는지 요?(건설폐기물은 기 발주처에서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시공사에서 배출자 신고시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자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됨)

A

건설공사과정에서 기존 매립지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 동 폐기물에 대한 분리·선별 결과, 당초 매립지에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되었던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 별표1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과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생활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및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리·선별된 건축폐재 등 폐토사류 및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당초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자인 발주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규 TMS 부착대상시설에 대한 초과인정시간 적용 관련

Q

'측정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소각로와 같은 소각시설의 경우 기준초과인정시간이 각각 정하여져 있습니다(가동개시 및 재가동시간 5시간, 가동중지시 3시간).

그러나 최근 추가부착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폐수소각시설의 경우는 '소각시설'이 아닌 '기타시설'로 분류되어져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소각시설'에 대한 초과인정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폐수소각시설 외 추가부착대상시설(산처리시설, 가열로 등)의 법적 전송시기인 2007.7월 이전에 각 시설에 대한 초과인정시간 적용에 대한 법률개정

검토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4.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붙인 사업장에 대한 특례규정 중 폐수소각시설은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초과인정시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에 한하여 가동개시·재가동 및 가동중지 시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곤란한 시설(방지시설의 효율, 공정의 특성 등을 감안) 대하여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귀하의 의견은 측정자료 전송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상 중금속은…

Q

수질환경보전법상 동법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 일반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규정하였으나 동법 등에서 그 폐수배출 시설의 규정 유·무를 결정하는 중금속을 동법이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동법동 시행규칙 별표4 배출시설 등에서는 명확히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 1) 동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중금속을 임의로 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동법에서 규정하는 중금속은 어느 항목이 중금속인지요?

A

질의 1)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중금속(비중 4이상인 금속류) 중 인체에 유해한 물질 및 그 화합물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금·은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중금속류는 동법에서 관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2) 수질오염물질로 규정된 오염물질 중 중금속(류)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철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분할시점에 대하여

Q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개발행위신청시 불허가 통지를 받아 고시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하수처리외지역, 관리지역으로 00시 00분 000번지에 제1종 근생(소매점)부지조성을 위하여 1965년 6월 분할한 토지($2,681m^2$)에 $998m^2$ 를 가분할로 근생(소매점)을 하기 위하여 06.12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건축연면적은 $396m^2$ 입니다.

질의 1) 필지분할시점이 1965년 6월로 고시 별표3 제2호 가목 적용을 받아 입지 가능한 것인지, 2006년 12월 신청일로 분할시점이 되어 제2호다목적용을 받아 입지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별표3제1호 다목의 규정 "분할등기된 필지중 (중략) 사전 인허가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에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 아직 허가받지도 않고 분할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미래시점으로 분할을 따지는 이유는 무엇이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부고시"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A

질의 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서는 토지분할시점에 따라 건축

를 용도별 입지제한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97.10.1 이후 토지를 분할한 토지에는 별표3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주거목적의 단독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또한 별표3 제1호다목의 "사전 인허가"란 건축물을 입지하기 위해 사전에 농지전용 등의 인·허가를 득한 경우를 말하여, 필지분할시점은 이 시점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발구역내 소하천 오니가 발생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Q 당 현장은 기존 농경지에 택지를 개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구역 내에 기존 소하천이 형성되어 있어, 생활폐기물을 이 일부 흔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공사 착수이전 하천바닥의 오니를 약 1M정도 준설하여 건조 후 생활폐기물을 인력 선별한 상태입니다.

질의 1) 상기의 하천오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분석결과 납, 비소, 수은, 6가 카드뮴, 시안, 기름, 유기인, 트리클로로 에틸렌,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구리가 0.02mg/L 검출된바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오니를 유기성오니와 무기성오니중 어떤 것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의 시험분석 결과가 유기성/무기성오니 분류 자료로 부족하다면, 어떤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상기의 하천오니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재활용 가능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질의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리목(2)(나)①의 규정에 따라 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유기성오니, 그 이하를 무기성오니로 분류합니다.

질의 2) 귀하께서 시험분석한 결과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분석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기성오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답변 "가"를 참고하여 시험분석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험분석결과서 제출은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재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원재활용과(02-2110-6956)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열시설(Heater) 증발량 환산방법

Q 금번 2010년 이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간과 관련하여 기존 가열시설의 경우 용량기준을 발열량(Kcal/H) 또는 배출가스량 (m^3/H)으로 구분하여 왔으나, 개정된 배출허용기준에서는 가열시설의 용량을 증발량(톤/시)으로 기준하고 있어, 기존 증발량이라 함은 보일러의 스팀 증발량은 이해가 되나, 가열시설(Heater)의 증발량은 환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및 쉬운 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A -가열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보일러의 경우도 가열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중에 있는 2010년 배출허용기준 예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열시설의 기준은 입법예고시에 가열시설의 경우 배출가스량 보다는 스팀증발량(발생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5개 정유회사 및 대한석유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일러의 증발량 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